

IV. 환경 단신

1. 교토의정서 조인국, 탄소 흡수원에 대해 논의함

○ 폴란드에서 UN 교토의정서 조인국들 회의

- 1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 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탄소 흡수원에 대한 규정을 확정하기 위한 사전 회의임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정부간 패널의 최근 보고서를 보완한 내용을 논의함
 - 여기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계획된 프로젝트들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술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이 지적됨
 - 이에 따라 EU 환경부 장관회의에서는, 흡수원 적용에 대한 규모와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면 교토의정서의 첫 실행기간의 종료 연도인 2012년까지 탄소 흡수원에 관한 계획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였고,
 - 탄소 흡수원을 청정개발메카니즘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함

○ 산림과 토지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 정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음

- 주요 논의점은 교토의정서 3.3 조항으로서
 - 조림, 벌목 그리고 재식림,
 -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인간의 활동,
 - 부지의 이용 및 변경 그리고 조림 활동 등이 논의됨
- 특히 LULUCF(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에 의해 흡수되는 탄소의 양을 측정하는 문제와 함께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탄소의 양과 인간의 노력에 의해 흡수되는 탄소의 양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합의안은 도출되지 않았음

(현대환경연구소, Eco-Brief, 2000년 7월 21일)

2. EU, 오염물질배출 등록제 시행 확정

- 지난 20일, EU 집행위원회는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등록제(EPER)를 실시할 예정임을 공표함

- 오염예방 및 제어에 관한 1996년 EU 지침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으며, 미국의 유해물배출목록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임
- EU 각 국 대표자 회의는 3년 동안 이 문제를 철저히 토의·검토하였으며, 결국 최종안을 놓고 투표를 실시하여 통과시킴

○ 2003년에 첫 번째 EPER이 발표될 것임

- EU 역내의 약 20,000개 산업시설에서 대기과 하천으로 배출되는 50가지 주요 오염물질의 2001년 자료를 대상으로 함
 - 주요 대기오염물질과 교토의정서에 의해 규정된 6개의 온실가스도 포함되며 중금속, 염화유기물, 유기·무기 화합물들이 포함됨
 - 각각의 지정물질은 일정 기준(농도 및 배출량)을 넘을 경우에만 등록 대상이 됨
- 두 번째 EPER은 2004년 자료를 2006년에, 세 번째 EPER은 2007년 자료를 2008년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해마다 전년도 자료를 발표할 예정임

○ 현 EU 회원국들 사이에 조금씩 다른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 기준이 앞으로 단일화되는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오염물질 배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각 산업시설간, 분야별 그리고 국가간 오염물질의 배출정보를 비교해 볼 수 있게 되고
- 시간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 그리고 기업의 환경오염 예방의지를 나타내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임

(현대환경연구소, Eco-Brief, 2000년 7월 25일)

3. WTO, 석면 수입 금지 지지

○ WTO는 캐나다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모든 석면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를 지지할 것이라고 함

- 이는 프랑스가 1996년에 제정한 석면 수입 금지 법규가 국제무역 관행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WTO가 그 정당성을 부여한 것임
 - 따라서 프랑스는 캐나다에 어떠한 형태의 보상도 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함
 - 주의해서 취급할 경우에 濫석면(chrysotile)이나 白석면은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캐나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네 명의 WTO 전권중재인들은 프랑스의 규정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수입을 제한한 것이 아니므로 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것임
 - 이들은 전문가들에게 온 석면의 유해성과 위해성평가 방법, 제한적인 이용의 가능성, 대체물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자문을 구한 뒤 결정함
- 유럽집행위원회에서도 2005년부터 **溫석면의 완전 금지를 포함해 어떠한 형태의 석면도 EU 내에서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하였음**
 - 유럽집행위원회는 인간이 석면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을 때까지 안전한 지 여부와 석면이 발암성을 나타내지 않는 수준 등에 대한 과학적인 결과가 아직까지 도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함
 - 그러나 EU 회원국인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은 여전히 溫 석면의 사용과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향후 캐나다 정부가 항소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관례상 판정이 번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임**
 - 캐나다 정부는 퀘벡州의 溫석면 광산과 연관된 2,500개의 일자리를 지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소할 것으로 예상됨
 - 캐나다는 온석면의 주요 수출국으로서 1998년에는 약 2억1천2백만 유로 상당하는 32만 톤을 생산해 전세계의 18.2%를 점유하여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양을 생산하였음
- WTO의 이번 판정은 환경 문제로 무역 상에 불이익을 부여한 최초의 조치로서 **향후 환경 이슈를 무역의 장벽으로 도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됨**
 -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 나라는 유해물 금지에 관한 각국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수출 물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자료를 철저히 갖추는 등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제품 제조 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고려하는 DfE (Design for Environment; 환경친화설계) 개념을 빠른 시간 내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현대환경연구소, Eco-Brief, 2000년 8월 1일)

4. 영국, 배출권거래제 유인책 마련

○ 영국 정부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임을 발표함

- 배출권거래를 위한 예비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영국 배출권거래그룹은 거래 시작 2년 후인 2003년에 기금을 분배한다는 정부의 정책을 환영함
 - 고용불안과 산업 경쟁력의 약화 없이 지구환경을 보호하도록 오염물의 배출량을 비용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이지만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함
 - 영국 정부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많이 감축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정부가 조성한 펀드를 부여할 계획임
- 이번에 도입될 활성화제도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이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 에너지稅 징수액의 80%를 되돌려주는 제도와 맥락을 같이함

○ EU 회원국 중 덴마크와 영국이 예비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지난 해에 제안된 예비 배출권거래제에는 현재 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영국정부는 이와 관련된 예산을 모두 승인하였음
- 특히 영국은 장차 설립될 탄소거래소를 런던에 유치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배출권거래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이 유치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또한 2005년부터 EU 차원에서의 배출권거래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이의 결과가 EU 시행안에 반영될 것을 기대함
 - 결국 自國에 유리하게 배출권거래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기본 전략이 배경이 됨
 - 이에 따라 독일과 노르웨이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함

○ 영국의 배출권거래 기금 적립은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도를 이행하는데 자극제가 될 것임

-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우리 나라도 관련 사업의 진행 추이에 관심을 갖고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현대환경연구소, Eco-Brief, 2000년 8월 1일)

5. UN Global Compact 고위급 회담 개최

- 지난 7. 26일 UN 사무총장 주도로 50여 다국적 기업 대표, 6개 국제 기업연합, 2개 국제노동단체, 7개 국제 시민환경단체 참여한 Global Compact 회의 개최

- 인권, 노동, 환경으로 이루어진 9개 조항의 국제규약 적용방안 집중 논의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원칙 1 : 국제 인권 보호 노력 동참
 - 원칙 2 : 기업의 인권 학대 행위 근절
 - 원칙 3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원칙 4 : 모든 유형의 강제 노동 철폐
 - 원칙 5 : 아동 노동 근절
 - 원칙 6 : 고용과 직위부여에 있어서의 차별 철폐
 - 원칙 7 : 환경오염 예방 접근법 강구
 - 원칙 8 : 환경 책임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실천
 - 원칙 9 :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 권장
 - 참여 기업대표들은 동 규약을 기업 경영방침에 명시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국제상공회의소 및 WBCSD(World Busines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환경 및 사회적 조항을 포함하는 포괄적 지속가능성 선언을 2002년 Rio+10 정상회담 이전까지 준비키로 합의

(요약번역 : www.unglobalcompact.org)